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#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이 개정(2011. 3. 22)되어 관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김에 따라 공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글자도 “한글전서체”에서 “한글”로 사용되도록 개정하여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공인의 글자 변경
  - “한글전서체” → “한글” (안 제5조제2항)

## 4. 검토의견

금번 조례안은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(2011년 3월 22일)의 개정  
에 따라 관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김에 따라 공인글자를  
“한글전서체”에서 “한글”로 변경하여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 
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